

이사 등 선임명세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공익법인등 명칭		사업연도	
----------	--	------	--

1. 이사 등 선임명세

이사 등 인적사항		③ 선임일	④ 해임일	⑤ 상임, 비상임 구분	⑥ 출연자와 의 관계	⑦ 출연법인 과의 관계	⑧ 다른 이사 와의 관계	⑨ 직전3년(5년) 계열기업 임원 근무여부	⑩ 초과 여부	⑪ 구분
① 성명	② 주민등록 번호									

2. 기준초과 이사 및 임·직원에 대한 경비 명세

⑫ 성명	⑬ 주민등록 번호	⑭ 직책	⑮ 취임· 근무일	해당연도 경비 명세						⑳ 합계	㉑ 구분
				⑯ 급료	⑰ 판공비	⑱ 차량 유지비	㉒ 비서실 운영비	㉓ 그 밖의 경비	㉔		

작성 방법

1. 이사 등 선임명세(①~⑪)란에는 공익법인의 전체 이사 및 임원의 명세를 적습니다.

가. "⑥출연자와의 관계" 및 "⑦출연법인과와의 관계"란에는 이사 등의 구성원이 출연자, 출연법인, 다른 이사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.

코드	특수관계 설명
0	본인
1	친족*,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*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.
2	사용인*(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며, 이하 같습니다)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*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임원, 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자
3	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(1) 본인이 개인인 경우 -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[코드1]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,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」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소속기업(해당 기업의 임원*과 퇴직임원**을 포함합니다) *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 ** 퇴직 후 3년(해당 기업이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)이 지나지 않은 사람 (2) 본인이 법인인 경우 - 본인이 속한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」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소속기업(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 포함)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·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[코드1]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
4	본인, [코드1]부터 [코드3]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[코드1]부터 [코드3]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
5	[코드3]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
6	본인, [코드1]~[코드5]의 자 또는 본인과 [코드1]~[코드5]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등의 30%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
7	본인, [코드1]~[코드6]의 자 또는 본인과 [코드1]~[코드6]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등의 50%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
8	본인, [코드1]~[코드7]의 자 또는 본인과 [코드1]~[코드7]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
9	해당없음

나. "⑨직전 3년(5년) 계열기업 임원 근무여부"란은 특수관계가 있는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임원으로 퇴직 후 3년(해당 기업이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) 이내인 경우 "여"로 적으며, 그 외의 경우에는 "부"로 적습니다.

다. "⑪구분"란에는 이사와 임원을 구분하여 적습니다. 이사와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이사로 적습니다.

2. 기준초과 이사 및 임직원에 대한 경비 명세는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.

가. 출연자[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38조제10항)]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(이사 현원이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봅니다)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에 그 초과한 이사에 대한 직접·간접 경비 명세를 적습니다.
※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부터,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부터 그 명세를 적습니다.

나. 임원·직원이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경우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80조제10항에 따른 의사·교직원 등의 경우는 제외합니다)에는 그 해당 임원·직원의 경비 명세를 적습니다.

다. "㉔구분"란에는 이사·임원·직원을 구분하여 적습니다. 이사와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이사로 적습니다.